

담수생물 및 생물 관련 분야의 글로벌 동향 및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ABS 해외동향III

ABS 의무준수를 위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40만 루피(한화 700만원) 이익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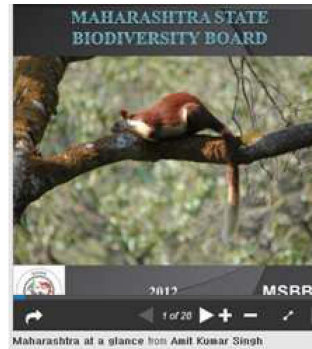
지난 소식지에서 해외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 소식지에서는 각 나라 또는 기업의 이익공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도는 생물자원 부국으로 알려진 나라로 생물다양성협약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도 중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 생물다양성위원회(MSBB)에서는 마하라슈트라주 내의 4개 기업으로부터 40만 루피(한화 700만원)를 이익공유의 차원에서 수수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 생물다양성위원회는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해 제약과 화장품 등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ABS이익공유 관련 지불명령을 인도에서 처음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마하라슈트라주 제조기업들이 순순히 명령에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영세업체는 40만루피가 너무 많다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특히 해당 규정은 외국계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주정부에서 통지한 처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에서 2014년 11월 통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소비재로 거래되는 생물자원은 제외되나, 생물자원의 상업적 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득해 인도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의무준수를 실천했습니다.

주정부의 생물다양성 규정을 살펴보면 “생물다양성 규칙”에 의해 제조업자들은 생물자원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여 신청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양식에는 회사주소와 생물자원 이름과 원산지 마을(panchayat), 자치단체(Municipality)명, 연간 생물자원 사용량, 생산정보, 연간 총수익 등을 아주 면밀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법 제56조에 따라 중앙정부령, 국가생물다양성법, 주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지시나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마하라슈트라주 생물다양성위원회 심볼



마하라슈트라주 생물다양성위원회 홍보자료

“마하라슈트라주 생물다양성위원회가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에게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두번째 혹은 후속 위반 시에는 20만 루피의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사적 사항으로 생물다양성법 제55조에서는 생물다양성위원회(MSBB)에 신고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식물 추출물을 이용할 경우 3년 금고와 벌금, 5년 금고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글 다양성보전연구팀 배기화

출처: www.sciencemag.org/news/ 및 ABS산업지원센터, www.abs.kr